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신설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무주택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부분분할상환 약정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특례 추가 (제58조 특례조치 중 2. 수요자 맞춤형 특례부분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추가)

나. 용어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박가영 과장(gyp@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22
- 팩스번호 : 0505-036-0462

붙임 :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